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 검토 보고서

2026. 4. 21.(화)

검 토 안 건	제 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
- 제안일: 2026. 4. 8.
- 회부일: 2026. 4. 15. (의안번호 : 26-34)

## 2. 제안이유

- 마포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기금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안 제3조~안 제6조)
-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안 제7조~안 제9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안 제16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3. 5.~3. 25.(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기금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소집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20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노인복지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은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특정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제도로서 우리구 기금현황을 보면 2026년 현재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기금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저금리 예금에 자금방치로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운용의 효율성, 회계구분·집행내역이 불명확한 운용의 투명성 등 기금의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금과 일반회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동행과	권윤영 (8860)	한정희 (885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5조(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용도), 제16조(수당)

###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은 공유재산 중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월드컵 수변카페 감정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용추계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026년은 8개월분 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재산임대수입		66,560	99,840	104,832	104,832	110,074	486,138
	소계(a)		66,560	99,840	104,832	104,832	110,074	486,138
세출	○ 공단전출금		34,188	60,000	61,800	63,654	65,564	285,206
	소계(b)		34,188	60,000	61,800	63,654	65,564	285,206
□ 총 비용(a-b)			32,372	39,840	43,032	41,178	44,510	200,932

### 4. 재원조달 방안: 전액 구비

###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은정
연락처	02-3153-8853

## 참고 자료

### 1.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2026. 3. 현재)

노인인구수			마포구 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계	남	여		
61,784	26,001	35,783	353,997	17.45%

## 3. 노인인구 증가 단계 현황

구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의 미	진입시기
고령화사회	7% 이상	고령화가 시작된 단계	2000년도
고령사회	14%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단계	2017년도
초고령사회	20% 이상	5명 중 1명이 노인인 단계	2024년도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 4. 마포구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소관부서
남북교류협력기금	2014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2024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기금	1999	구민안전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2019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003	실버리복지과
양성평등기금	2005	가족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경제진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23	예산정책과
공유재산관리기금	2019	재 무 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991	깨끗한마포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995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2006	자원순환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보행행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997	도로개선과
식품진흥기금	2001	위 생 과